







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, 보건복지부 우수시례 발표

- ▲적극 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, ▲국민과 의료인 건강 보호, ▲지역경제 살리는 지원. ▲어려운 기업활동 지원 등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'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'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 - *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
 - 1.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
 - 2.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의료인 건강을 보호하다
 - 3.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
 - 4.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 활동 지원
- □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이 **감사와 징계에 대한 걱정 없이 신속하고**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.
 - 이러한 적극 행정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유행에도 **신속하고**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.
 - 적극 행정을 조직 문화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**우수**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70여 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.











□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1.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>

-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진단 검사 체계를 준비했고, 코로나19 유입 시 즉시 전국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, 민간에게도 검사법을 공개해 민관 협력으로 더욱 진화된 검사 체계를 완성하였으며, 수출에도 기여
- 기존 검역 절차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'특별입국절차'를 신속하게 만들었으며,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체계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'생활치료센터'를 운영. 대구·경북 지역에 신속하게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'감염병특별관리지역'을 지정·지원
- 부족한 의료 인력을 **'공중보건의사'의 헌신으로 극복**할 수 있었고, **군수송기** 등을 동원하여 보호 장구를 신속히 수입해 의료진에게 배송
- □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기존 업무 범위 안에서 노력하는 것을 넘어, 규정과 절차가 없어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.
- □ (진단 검사 체계 사전 구축)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2018년 4월부터 '원인불명 감염병 진단분석 특별조직(TF)'을 만들어 검사법을 미리 준비 하였다.
 - 2019년 12월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 유입을 가정하여 병원체 규명을 위한 절차를 사전 결정하는 모의 훈련을 통해 진단 검사 체계를 준비하였으며,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를 진단하였다.











- (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술 이전) 신속하고 정확한 자체 개발 검사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술이전 하여 17개 보건환경 연구원 등 전국에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.
 - 이어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민간 기관에 검사법을 공개해 진단 시약을 개발하도록 하였고, 개발한 시약은 긴급사용 승인제도*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빠르게 신청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.
 - *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진단 시약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나,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이 요청한 제품의 허가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제조·판매·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(신속·비용 효율적 진단 체계 운영) 전국의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 검사 기관과 단가 협상 및 위탁 검사 계약을 직접 체결 하였다.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검사기관에 검사 비용을 빠르게 선지급하고, 나중에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(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)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.
- □ (특별입국절차 도입)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방식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코로나19에 맞는 새로운 검역 방법을 만들었다.
 - 자율성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입국자를 관리하기 위해 **입국자 휴대폰에 설치할 자가진단앱을 신속히 개발할 필요**가 있었다.
 - 이에 '입찰-공고-계약-개발'하는 기존 절차 대신 적극행정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, '선 개발-후 계약'으로 신속히 앱을 개발해 '특별입국절차'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.











- □ (생활치료센터 도입) 대구·경북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환자가 급증했을 때에도,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료 체계 과부하를 피할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고 격리하기 위한 '생활치료센터'라는 새로운 치료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였다.
 -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를 하면서도 **의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** 하므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배치해 필요한 진료를 하였고,
 -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전화 상담·처방도 병행해 환자의 치료를 돕고 의료진의 코로나19 노출을 줄였다.
- □ (공중보건의사의 기여)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인력의 부족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운영, 검체 채취, 역학조사, 감염병전담병원 진료 현장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였다.
 - 곧 임기 종료 예정이던 공중보건의사 792명은 마지막 임기를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였고, 올해 새로 임용 예정이었던 742명은 예정된 군사훈련 대신 감염병 교육 후 코로나19 현장에서 활약하였다.
- □ (의료인 보호) 코로나19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전화상담·처방 및 대리수령자의 한시적 확대를 통해 환자 접촉 감염을 줄일 수 있었다.
 - 의료용 방호복 등을 민간에서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**군화물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전달**하려 노력하였다.
- □ (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)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최선의 지원을 하기 위해 '감염병특별관리지역'이라 이름지어 인력과 물자 등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.











- □ (맞춤형 적극행정지원단 운영) 코로나19 대응의 의사결정은 적시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걱정 없이 과감하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였다.
 -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박능후 장관을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직원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주었고, 감사담당관, 운영 지원과 등이 함께 상담 및 지원하였다.
 - * '20.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31건 의결, 긴급계약건에 대한 일상감사 36건(919억 원) 완료

< 2.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하다 >

- 코로나19로부터 **의료인을 보호**하고 **환자 방문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상담· 처방을 한시적 허용**했고, **350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**하여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분리·진료함으로써 **의료인과 환자 모두 보호**
-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**대리 수령자의 범위를 확대**하고, 무연고자, 교정시설 재소자 등의 처방전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
- 약국 방문을 줄이기 위해 **선별진료소**에서 **직접 조제를 한시적 허용**하였고,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,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 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**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선지급, 조기 지급 지원**
- □ (전화 상담·처방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진 감염 우려와 환자도 방문을 꺼려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,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.
 -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**전화로 상담·처방을** 할 수 있도록 **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용**하였다.
 - * 전화 상담·처방 이용 현황 ▲(2.24~4.1) 2.7만 건→ ▲(2.24~4.19) 13.0만 건 → ▲(2.24~5.6) 22.2만 건 /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기준, 청구 시기와 진료 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 건수와는 일부 다를 수 있음











- □ (국민안심병원 운영) 코로나19로 환자는 병원 방문을 꺼리고, 의료기관은 진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,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.
 - 전국 350개 지정·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진입하기 전에 호흡기 증상과 발열 등을 확인하며,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고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감염 예방에 특화된 병원이다.
- □ (처방전 대리수령 확대)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무연고자, 교정시설 재소자 등의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
 -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 시설 근무자,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등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 의사의 판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.
- □ (선별진료소 직접 조제 확대)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하나, 약이 처방된 경우에는 약국을 방문해야 했다.
 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검사에 필요한 의약품만 의사의 조제가 가능한 기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, 선별진료소 처방도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의 약국 방문을 줄일 수 있었다.











- □ (의료기관·약국 급여비용 선지급)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환자 진료 등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이 일반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였다.
 - 건강보험 급여비는 진료한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,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청구 후 22일만에 지급하던 것을 10일로 조기 지급 하였고, 전년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 공백을 방지하였다.
 - 이에 따라 5월 8일까지 8조8000억 원을 조기 지급하였고, 1조7000억 원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선지급하였다.

< 3.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>

-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소득하위 50%까지 최대 50%의 건강보험료 경감,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0회 분할 납부 조치하여 부담 완화
- 저소득층에게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비 쿠폰 지급, 긴급복지지원 확대,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으로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아동돌봄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**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**를 위해 1인당 40만 원의 **아동돌폼쿠폰 지급**
- □ (건강보험료 부담 완화)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%까지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의 하위 40%까지 최대 절반의 보험료를 낮췄으며,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 892만 명이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하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.
 - 이에 따라 총 1,160만 명의 저소득층, 소상공인,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 3개월간 1인당 91,559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었다.









- □ (저소득층 지원)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 생계뿐만 아니라,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였다.
 - (소비 쿠폰 지급) 저소득층 230만 명을 대상으로 종이상품권 등 기존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카드 등 충전식 카드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였다.
 - 대상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, 명부를 전산시스템에 미리 구축해 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 따른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해 간소하고 신속하게 지급하였다.
 - 또한 방문이 어려운 가구에는 **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**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했다.
 - (긴급복지 지원) 코로나19로 인한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의 소득·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.
 -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지침 개정만으로 재산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**하였고, 이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,447가구가 더 혜택을 받았다.
 - (노일일자리 활동비 선지급)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를 동의한 경우에 미리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안정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.











- □ (아동돌봄쿠폰 지원) 아동양육 가구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 돌봄을 위한 소득 활동 제한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, 만 7세 미만 아동 약 263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'상품권 등'을 지급하였다.
 -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**대면 지급을 최소화**하고자 **돌봄포인트라는 전자상품권 형식**의 **새로운 지급 형태**를 도입하였다.

< 4.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 활동의 지원 >

-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공신력있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인 '건강 상태확인서' 발급 제도를 신속 도입하여 출국 기업인과 외교관 등에 발급
-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**선제적으로 해외 수입 방역 물품의 국산 대체** 추진
- 사업장 직원의 **격리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'유급휴가비용'을 신속히 지원**하여 **대상자 발생 시 적극 협력하도록** 하였으며, 코로나19로 **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**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금 징수하지 않기로 함
- '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 지침'을 신속히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종사자 소득을 지원하고,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 및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였다.
- □ (건강상태 확인서 발급)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여 우리 기업인과 외교관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, 공신력 있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인 '건강상태확인서'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.
 - *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▲검사 항목, ▲발급 시기(24시간 vs 48시간 이내 등), ▲확인서 서식 등 논의를 거쳐 확인서 양식 마련











- □ (방역물품 국산화 추진) 세계보건기구(WHO)의 세계적 유행 선언이후, 각국의 방역 물품 수요 급증 및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존에 보유한 비축물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.
 - 이에 방역 물품 생산 방식을 조사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,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방호복, N95, 고글 등 국내 방역물품 생산업체를 발굴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.

<	필요량	대비	정부	방역물품	국산화	추진	현황	>
---	-----	----	----	------	-----	----	----	---

품목	국산화 이전	전(3월 이전)	국산화 이후(5월 이후)		
古古	국내생산	해외수입	국내생산	해외수입	
방호복	5%	95%	100%	_	
N95	_	100%	67%	33%	
고글	5%	95%	100%	_	
장갑	_	100%	75%	25%	

- □ (격리직원 유급휴가비용 지원) 사업장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나 치료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하므로 격리·입원을 위한 유급휴가비용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였다.
 -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**국민연금공단에 이 업무를** 위탁하여, 사업장의 협조로 신속히 지원했다.
- □ (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)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· 적용하여 2020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, 3월부터 5월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다.
 - 그 결과 1인당 월 25만5000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되었고, 총 536억 원의 연체금을 면제했다.











- □ (장기요양기관 지원)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관의 휴·폐업, 종사자의 대규모 실업 및 무급휴직 등 발생이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다.
 - *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90%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해당
 -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'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'을 신속하게 마련·시행하여 지원대책*을 추진하였다.
 - * ① 다양한 의심사례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시 근로시간 인정 및 인력 배치기준 위반 미적용 등, ② 주·야간보호기관 특별수가 지원, ③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, ④ 방문상담을 유선상담으로 변경. ⑤ 자가격리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(1인당 15만 원)을 지급
 - 이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집단감염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였고, 기관의 경영상 위기 극복 계기를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폐업 기관 수가 감소하였다.
- □ (어린이집 운영 지원) 긴급보육 실시 및 보육교사의 고용 유지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,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어린이집 약 1만3000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*하였다.
 - * ① 아동 등록 시 기관보육료 지원, ②휴원 기간동안 출석으로 인정하여 부모보육료 지원, ③인건비 지원 기준(정원의 50%)을 채우지 않아도 인건비 지원, ④교사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교사수당 전액 지원, ⑤3월 대비 4월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은 3월 아동 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 지원 등











- □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**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**하여 포상과 함께 **승진 가점, 성과급우대, 포상 휴가, 교육 훈련 가점 부여, 승진 반영** 등 다양한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.
 - 이와 함께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확산할 계획이다.
- □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(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)은 "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."라고 강조하면서 "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한 공무원이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"이라고 전했다.
 - 덧붙여 "국민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행정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



